

산학협력단 운영 규정

개정 2016.06.01

주무부서 : 산학연구기획팀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문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)의 학칙과 전문대학교 산학협력단(이하 “산학협력단” 이라 한다) 정관의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6.3.1.>

제2조(기능) 본교의 산학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의 업무를 유기적·통합적으로 기획·조정함으로써 산학협력 업무의 수월성을 제고하고자 한다.<개정 2016.3.1.>

제3조(사업)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산학협력 계약체결 및 이행
2. 산학협력단 사업과 관련한 예산 편성 및 회계의 관리
3.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<개정 2016.3.1.>
4.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
5. 산학협력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 및 관리
6. 산학협력단 회계에 의한 물품 구입, 검수 및 자산관리
7. 산학협력 관련 연구소의 지원 및 관리 등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산학협력단의 업무
8. 연구소 중앙관리(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, 평가, 통폐합, 관리 등)에 관한 업무<신설 2006.5.1>
9. 교외 연구비 중앙관리(수입 및 지출 결의, 진도관리, 결과보고, 결산, 증빙자료 관리 등)에 관한 업무<신설 2006.5.1>
10. 학교 기업에 관한 업무<신설 2006.5.1>
11. 벤처기업 지원 및 관리 업무<신설 2006.5.1>
12.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산학협력 사업에 관한 업무

제2장 조직

제4조(산학협력단장) ①산학협력단장(이하 “단장” 이라 한다)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총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그 소관 업무를 통할한다.

②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단, 산학협력단 부단장이 있을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정관에 의한다.

제5조(실무위원) ①실무위원은 3인 이내로 두며 산학협력단장의 업무를 지원, 수행한다.<신설 2006.5.1>

②산학협력단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신설 2006.5.1>

제6조(사무국)<삭제 2016.6.1.>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7조(운영위원회) ①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주요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개정 2006.5.1>

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산학협력단의 단장 및 부단장, 기획처장을 포함하여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9인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.

③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다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8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산학협력단 운영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
2. 산학협력단의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산학협력단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
4.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5. 기타 산학협력단 운영상 중요한 사항

제9조(소집 및 의결)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4장 산학협력위원회

제10조(산학협력위원회) ① 대학과 산업체·정부 및 지방자치단체·타 연구기관 등과 각종 유기적인 산학연관 협동체제 구축을 위한 협의기구로 산학협력위원회를 둔다.<개정 2014.12.1>

② 산학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단장, 기획처장을 포함하여 산학협력 관련 연구소장,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체의 대표, 지역 NGO 및 언론기관, 충남도청 및 아산시 등 지자체, 그 밖의 산학협력기관 등의 관계자 중에서 9명 이상을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.<개정 2014.12.1>

③ 위원장, 당연직 위원 및 산학협력 관련 연구소장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④ 이 외에도 산학협력위원회 지원과 학과(전공)별 원활한 산학협력을 위하여 학과(전공)별 산학협력협의회 또는 유관 협의회를 둔다.<신설 2014.12.1>

제11조(협의사항) 산학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
1. 산학연관 협동체제 구축에 필요한 기금조성 및 관리
2. 산학연관 공동연구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
3. 산학연관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 구축
4. 기타 산학연관 협력에 관한 주요사항

제5장 보칙

제12조(소속 직원 등 임용)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 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 및 연구원을 임용할 수 있다.

② 단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 및 연구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, 급여,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제13조(회계) ① 산학협력단 회계처리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산학협력단 회계 처리규칙에 의한다.

② 산학협력단의 예산 편성, 운영 및 결산 등 회계에 관한 업무는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다. 다만, 산학협력단 회계업무 중 산학협력단의 처리가 적당하지 않고 본교에서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회계업무는 협의를 거쳐 본교에 위임할 수 있다.<개정

2016.3.1.>

제14조(구매) 산학협력단 회계에 따른 구매업무는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다. 다만, 산학협력단 구매업무 중 산학협력단의 처리가 적당하지 않고 본교에서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매업무는 협의를 거쳐 본교에 위임할 수 있다.<개정 2016.3.1.>

제15조(자산관리)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따른 자산관리 업무는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다. 다만, 산학협력단 자산 관리업무 중 산학협력단의 처리가 적당하지 않고 본교에서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산 관리업무는 협의를 거쳐 본교에 위임할 수 있다.<개정 2016.3.1.>

제16조(인사관리)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 및 연구원의 인사관리는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다. 다만, 산학협력단 인사업무 중 산학협력단의 처리가 적당하지 않고 본교에서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사업무는 협의를 거쳐 본교에 위임할 수 있다.<개정 2016.3.1.>

제17조(준용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령, 산학협력단 정관 및 본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.<개정 2016.3.1.>

제18조(관리규정) 이 규정의 세부사항 등은 교외연구비 중앙관리 규정, 지식재산권관리규정, 벤처기업 지원 및 관리규정, 부설연구(원)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,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규정, 취업규칙 등에 의한다.<신설 2011.12.1>

부칙<2004.2.1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<2006.5.1>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<2011.12.1>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<2014.12.1>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<2016.3.1>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<2016.6.1>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본 개정규정 중 2016학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은 조직개편일인 2016년 3월1일을 시행일로 본다.